

토양환경보전법 및 제도개선 방향



환경부

순서

I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
II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

III 토양관리 정책 방향

IV 토양환경 제도개선

I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
목 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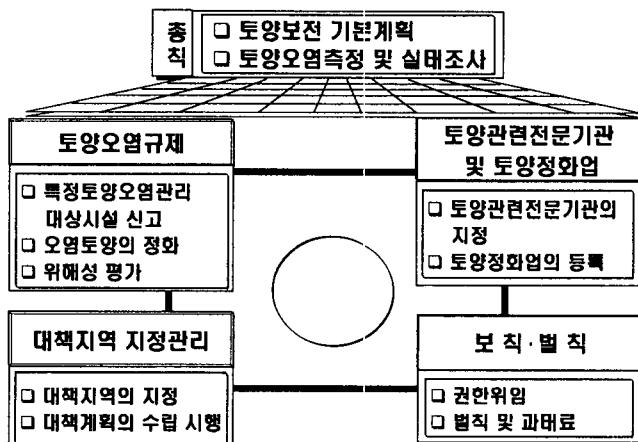
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방지 등 토양의 적정한 관리·보전

연혁

- 1995년 제정
- 3차례의 개정(1999년, 2001년, 200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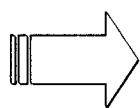
I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
토양환경보전법의 구성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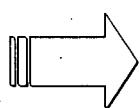


I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
토양환경관리의 특성



대기 · 수질 등
규제법적 성격



토 양
책임법적 성격

I.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요

토양환경관리의 기본틀



국 가

민 간

토양측정망(지방환경청)

토양실태조사(시·군·구)

토양오염도 검사

토양환경평가



오염원인
자부담의
원 칙

오염유발자, 소유·점유·운영자

II.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

오염토양 발견 신고제 도입(제11조)

- 오염토양 발견시 원인자 또는 발견자가 신고하도록 함
 - 현장조사 및 필요시 조치명령
- * 법적없음 : 발견자 식별곤란 등

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토양오염검사(제13조)

-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년수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
 - 검사결과 우려기준의 40% 초과시 누출검사 실시
- 특정토양오염대상 시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 6월이내 누출검사 일의 시행당시를 기준으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둠
 - 설치한 후 15년 경과 2007.6.30까지
 - 설치한 후 10~15년경과 2008.6.30까지

II.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

토양오염 방지조치(제15조)

- 오염원인자??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정밀조사 명령
- 상시측정,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 초과시
 -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
 -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
 - 오염토양의 정화

오염토양의 정화(제15조의3)

-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함
- 오염현장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갖춘 시설부지에 반입하여 정화
 -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대상을 고시
-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농도만 낮추는 행위 금지

II.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

토양정화업 등록제도 및 토양정화검증제도 도입(제23조의7, 제15조의6)

-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토양정화업 등록
 - 토양환경기술사, 토양환경기사 자격신설 : 국가자격기술법
- 토양오염도조사기관이 정화검증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

오염토양 투기금지 규정 신설(제15조의4)

- 정화 과정에서 누출·유출시키는 행위금지
-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II.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

토양환경평가제도(제10조의2)

- 부지를 양도·양수하거나 임대·임차하는 경우 토양환경평가를 실시
- 평가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추정
- ※ 선진국의 경우 기업 M & A시 부지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

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(제10조의3)

-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함
 - 토양오염을 유발시킨자,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·점유 또는 운영자
 -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·합병·상속 그밖의 사유로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

II.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내용

토양오염 위험성평가 제도(제15조의5)

-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평가하여 토양정화 범위·시기 조정
 -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

토양관련전문기관의 기술요원 등의 교육 (제23조의14)

- 토양오염공정시험 방법 미준수 등 위반사례 발생
- 시료채취방법, 장비운영기술, 토양분야 신기술도입에 대한 교육실시
[국립환경인력개발원]

III. 토양관리 정책 방향

토양 및 지하수의 효율적 연계관리

- 토양보전 기본계획('06~'15) 수립·시행
 - 토양오염기준 재설정, 국가우선정화대상 목록 작성, 오염토양 복원 재원마련 및 토양 및 지하수 관리 로드맵 작성 등
- 지하수·토양환경정보 시스템(WEB-GIS) 구축
 - 가칭 '원-클릭 지하수·토양세상'을 설치,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, 물환경정보관리시스템 등과 연계

III. 토양관리 정책 방향

유·폐금속광산 조사 및 사후관리

- 전국 906개 광산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토양오염방지사업시행
 - 환경부는 오염토양 정밀조사, 산자부는 광해방지사업, 농림부는 오염농경지에 객토 및 개량사업 추진
- 양후 광해방지 사업은 『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광해방지 사업단에서 추진(‘07이후)
 - 침출수 및 광마유실방지, 주변토양오염 복원
- 사업완료 광산의 환경오염 영향 조사
 - 토양, 수질오염도 조사, 오염원유출여부 및 시설물관리실태 등
 - 시설물복구, 농지개량, 오염토양복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

III. 토양관리 정책 방향

토양오염 취약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

- 산업단지, 주유소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정화
 - 여수, 창원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, 전국 주유소의 MTBE 오염실태 정밀조사 실시 및 정화방안 마련·추진
- 유류 저장탱크 시설 기준 강화
 - 이중벽 탱크, 이중 배관 등 설치 유도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

자율적인 토양·지하수 오염예방 지원 강화

- 토양·지하수 오염 우려가 없는 클린(Clean)주유소를 시범 설치, 토양오염도 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
- 오염토양 자율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 대상에 철도공사,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협약대상 주유소 확대 (기존 정유사 직영 → 임대주유소)

IV. 토양환경 제도개선

- “토양”의 정의 및 관리 범위 설정
 - 토양오염물질 관리대상시설 등 확대로 토양오염 위해제거
- 토양오염정화비용 마련
 - 예치금 또는 기금 형태로 조성
- “흙”의 날 제정 운영
 - 토양의 중요성, 오염실태 등을 홍보
- 토양관리 정보센터(기장) 설립 추진
 - 토양·지하수 오염상태등 정보의 연계등
-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방안
 - 조세감면, 정화기술보급, 인력수요확대 등
- 토사의 유실 및 침식방지 대책

감사합니다.